

코로나19 관련 복무·복지제도 개선

kt·kt노동조합



“4월 결혼 예정인데, 코로나19로 바로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. 결혼청원휴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!”

✓ 1분기 중앙노사협의회(3.24) 의결에 따라 본인결혼 직원에 한하여 2020년 말까지 청원휴가 사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.

➔ 코로나19 관련 노사협의사항

1. 안식년휴가, 본인 결혼 청원휴가 → 2020년 말까지 기한 연장

- '20.2월 이후 안식년휴가 기한 도래직원 및 결혼직원 중 청원휴가 미사용 직원의 기한 연장
※ 코로나19 장기간 지속 시 대상확대 및 추가연장에 대해 추후 안내 예정

2. 수련관 생활입소 →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 기간만큼 기한 연장 (세부 내용은 추후 전사공지 예정)

- 생활입소 대상 : 장기공로(만59세), 결혼기념(10·20·30주년) 직원 *사유 발생월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원칙

3.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→ 기선정직원의 불이익 최소화 방안 검토 후 노사협의 시행

※ 국내·외 확산추세, 한국인 입국제한 상황 등 다양한 상황 고려 필요

Q. 퇴직연금 중도인출

“특정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사유로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?”

✓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며,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[퇴직연금 법정 중도인출 사유]

-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, 임차보증금 부담시 (1회 限)
- ③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
※ 단, '20.4.29일 이후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.5%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限
- ④ 가입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
▶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DC형으로 전환 必

☞ DC형 전환 일정(별도 공지) : ① 정기전환(1·7월 시행) ② 중도인출 사유 限 전환(4·10월 시행)

▶ 혼합형은 DC형으로 운영하는 금액 限 중도인출 가능